##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증권거래법위반·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사·상법위반

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3. 2010고합280,2010고합282(병합)]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 외 10

【검 사】 김상현 외 1인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최영로 외 17인

## 【주문】

- 1.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, 피고인 2(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1)를 징역 4년에, 피고인 3(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2)을 징역 3년에, 피고인 4를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5, 피고인 6, 피고인 7을 각 징역 1년에, 피고인 8 주식회사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7)를 벌금 500,000,000원에, 피고인 9(제2심판결의 피고인 8)를 징역 5년에, 피고인 10을 징역 2년에, 피고인 11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9)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.
- 2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4년간, 피고인 4,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각 3년간, 피고인 5, 피고인 7, 피고인 11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3. 피고인 3, 피고인 10에 대하여 각 240시간의, 피고인 4, 피고인 7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 [범죄사실 정리]

피고인 사건번호범죄항목죄명 피해자 금액 공범 피고인 1280호 표. 1 횡령 공소외 1 주식회사 166억 1,800만 원 (29회) 피고인 2, 피고인 3 표. 2 횡령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(31억 상당) 표. 3 횡령 공소외 10 주식회사 9억 + 3억 표. 4 횡령 공소외 5 주식회사 5억 표 배임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(약 68억 상당) IV. 1 배임 피고인 8 주식회사 542억 7,000만 원(7회) ? IV. 2 횡령 피고인 8 주식회사 15억 ? IV. 3 횡령 피고인 8 주식회사 10억 ? IV. 4 횡령 피고인 8 주식회사 3억 ? V 횡령 피고인 8 주식회사 5000만 원 + 2억 5,000만 원피고인 2 VII. 1 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? 피고인 4 VII. 2 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? 피고인 5(피고인 36 주식회사) VII. 3 현실거래 및 가장거래, 사기부정거래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? (공소외 3)(공소외 37 주식회사) VII. 4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? 피고인 6, 피고인 7(공소외 30, 공소외 31)VII. 5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? (공소외 30) VII. 6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? (공소외 32) VII. 7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? (공소외 33) VII. 8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후 교고인 3 VII. 9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? (공소외 14) ? ?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1 부당이득 : 29억 5,200만 원 + 5억 6,600만 원 = 35억 1,800만 원부당이득부분 이유 무죄 VIII. 1보고의무위반 공소외 2 주식회사 14회 ? 피고인 1282호2. 나 (1)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 담보제공(110억 1,750만 원 상당)피고인 92. 나 (3)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10억 1,000만 원(공소외 40 주식회사 대여) 2. 나 (4)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11억 원(공소외 41 주식회사 대여) 2. 나 (5)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11억 원(공소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외 18 주식회사 대여) 피고인 9, 피고인 102. 다배임공소외 17 주식회사30억(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하지 않는 합의) 피고인 95. 나횡령공소외 25 주식회사60억(공소외 23에게 채무변제)5. 다횡령공소외 25 주식회사공소외 2 주식회 사 주식 110만주 담보제공(31억 상당)? ??????피고인 2 280호II. 1횡령 공소외 1 주식회사166억 1,800만 원(29회)피고인 1, 피고인 3 II. 2횡령 공소외 1 주식회사주식(31억 상당)II. 3횡령 공소외 10 주식회사 9억 + 3억 Ⅱ. 4횡령 공소외 5 주식회사5억 Ⅲ. 배임 공소외 1 주식회사주식(약 68억 상당) V. 횡령 피고인 8 주식회사5,000만 원 + 2억 5,000만 원피고인 1 VI. 1 횡령 공소외 1 주식회사176,999,930원피고인 3VI. 2 횡령 공소외 5 주식회사 10억 VI. 3 횡령 공소외 10 주식회사약 10억 원 + 2억 ? ? ? ? ? ? 기고인 3 280호Ⅱ. 1횡령 공소외 1 주식회사 166억 1,800만 원(29회)피고인 1, 피고인 2 II. 2횡령 공소외 1 주식회사주식(31억 상당)II. 3횡령 공소외 10 주식회 사 9억 + 3억 Ⅲ. 4횡령 공소외 5 주식회사5억 Ⅲ. 배임 공소외 1 주식회사주식(약 68억 상당) VI. 1횡령 공소외 1 주 식회사176,999,930원 피고인 2 VI. 2횡령 공소외 5 주식회사10억 VI. 3횡령 공소외 10 주식회사 약 10억 원 + 2억 VII. 8시세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? 피고인 1 ? ? ? ? ? ? 공소외 2 주식회사 피고인 8 주식회사280호VII. 11시세 조종 공소외 2 주식회사 35억 상당양벌규정(피고인 1) WII. 2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공소외 2 주식회사 22회처벌주체 (벌금)/Ⅲ. 3소유주식변동 보고 공소외 2 주식회사 42회처벌주체(벌금)????????피고인 9282호2. 나 (1)횡령공 소외 17 주식회사공소외 22 주식회사 주권 담보제공(110억 1,750만 원 상당)피고인 12. 나 (2)횡령공소외 17 주식회 사70억(공소외 39 주식회사지분매입) ? 2. 나 (3)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10억 1,000만 원(공소외 40 주식회사 대여 )피고인 12. 나 (4)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11억 원(공소외 41 주식회사울산공장)피고인 9282호 2. 나 (5)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11억 원(공소외 18 주식회사 대여)피고인 1, 피고인 102. 다 배임공소외 17 주식회사30억(신주인수권부 사채 불행사 합의)피고인 13 횡령공소외 17 주식회사공소외 17 주식회사 보유 127억 상당 주식 담보(공소외 22 주 식회사 124억, 공소외 25 주식회사 3억)(공소외 24) 4. 나 횡령공소외 25 주식회사24억 5,500만 원 ? 4. 다 배임공 소외 25 주식회사60억(피고인 10 채무변제 위해 대여)5. 나 횡령공소외 25 주식회사60억(공소외 23에게 채무변제 )피고인 16. 나 (1)상법위반공소외 22 주식회사70억 가장납입피고인 10, 피고인 11 6. 나 (2)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공소외 22 주식회사허위기재6. 다 배임공소외 22 주식회사70억 보증? ??????? 피고인 10 282호2. 나 (5) 횡 령 공소외 17 주식회사 11억 원(공소외 18 주식회사 대여)피고인 1, 피고인 9 6. 나 (1) 상법위반 공소외 22 주식회 사 70억 가장납입 피고인 9, 피고인 11 6. 나 (2) 공전자기록불실기재 공소외 22 주식회사 허위기재 ? ? ? ? ? ? 기고인 11282호 6. 나 (1)상법위반공소외 22 주식회사70억 가장납입피고인 9, 피고인 106. 나 (2)공 전자기록불실기재공소외 22 주식회사허위기재

[이유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